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규남, 남창진,
박승진, 박철성, 서상열,
서준오, 아이수루, 왕정순,
유정희, 이민옥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
홍국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관리”을 “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관리를”을 “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을”로 한다.

6.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7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8.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,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6.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<u>관리를</u>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5조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,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----- -----</p> <p><u>관리, 지역문화의 진흥을</u> 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문의결과¹⁾ 별도의 비용수반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(문의결과 통상 1년에 2회)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 추가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⇒ 다만, 향후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안건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건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함